

구 고 시

◆ 용산구고시 제2015-138호

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99호(2011.10.13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한강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15일
용 산 구 청 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

1)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없음)

다. 정비계획

- 1)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- 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- 3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- 4)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- 5)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기정	도시환경정비사업	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	기존 : 309세대※ 계획 : 476세대	
변경	변경없음	2016. 10. 10. 까지	변경없음	변경없음	

6) 기타정비계획사항(변경없음)

2. 변경사유

○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임

3. 관계도면 : 변경없음(생략)

- 토지이용계획도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 -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도서 참조

4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 2199-7404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 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정비구역결정도(변경없음)

